[별지 제55호 서식]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 20 년 월 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로 대환신청합니다.

ㅇ 계약자 정보

인적사항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공제계약번호	
	주 소			
	휴대번호		E-mail	

ㅇ 대환대출 신청

대출 종류	
대환대출 신청액	금 원 (₩)

※ 대출한도는 납부부금 합계액과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의료대출은 최대 1천만원, 재해대출은 최대 2천만원과 재해확인서상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회생·파산대출은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하며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환이 결정된 경우 기존 대출금을 신규 1건으로 통합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 내용 변경 신청

구분		신청 내용
대출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자수납일		매월 ( ) 일

ㅇ 기존대출 상환신청

No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이율	연체여부	상환신청
1					
2					
3					
4					

약정서

제1조(대출신청자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조(대출기간) **대출기간(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은 일반대출은 1년, 의료대출은 1년, 재해·회생·파산대출은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제3조(상환방법)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4조(대출이자) ①일반대출의 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

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

④대출시행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

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출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공제소개-기준이율공시-대출이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⑥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의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 최초 대출기간내 미상환시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미납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약 정 서	1.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 2.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4.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 5. 계약이 무효가 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계약해지후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우선변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제7조(부대비용) 대출에 따르는 제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및 재판외의 제비용, 손해금은 중앙회가 정하는 요율.시기.계산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여 변제합니다. 제8조(이행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센터로 합니다. 제9조(주소변경통지) 본인은 약관 제27조에 따라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하고, 변경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제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약관

1. 본인(계약자)이 지급하여야할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정하는 납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출금 대체하여 주십시오.
2. 자동납부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중앙회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납기일 이후에는 중앙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미납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납입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순서는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4. 자동납부이체개시일은 중앙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중앙회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개시일로 합니다.
5. 자동납부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중앙회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중앙회가 협조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합니다.

본인은 대출 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2호(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 약정서의 각 조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구비서류	
일반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료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입원확인서 원본(연속 3일 이상 입원기간 명시, 퇴원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 (입원확인서에 진단내용 포함시 진단서 생략 가능) ③ 진단서 원본(진단서에 입원기간 포함시 입원확인서 생략 가능)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 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출산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해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재해확인서 원본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원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생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등, 회생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산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결정문 등, 파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2. 5. 16. 개정시행) (2023. 9. 26 개정, 2023. 10. 16 시행) (2024. 5. 9. 개정, 2024. 6. 1. 시행) (2024. 10. 1. 개정시행)